

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4. 11. 5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민행정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9월 8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4년 9월 8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4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4. 11. 5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생활복지국장 박 종 인)

- 가. 제안이유
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입법·시행됨에 따라 관련
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- 나. 주요골자
상위법 변경(생활보호법 → 국민기초생활보장법)에 따른 인용조문 등 수정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